



제276회 정례회
2008. 12. 3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
관한 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재옥 의원의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8년 12월 1일
- 회부일자 : 2008년 12월 1일

3. 제안 이유

- 「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」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피해 학생의 보호,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「충청북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

4. 주요 내용

- 가.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·근절을 위해 교육감과 협의, 선도·교육활동 장려,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(안 제3조)
- 나. ‘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’의 설치,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11인 이내로 함(안 제5조)
- 다. 교육감이 수립한 ‘지역 학교폭력 예방대책 계획’을 심의.조정

- 확정하는 ‘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’ 기능을 정함(안 제6조)
- 라. ‘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’의 효율적 운영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7명이내의 「실무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
(안 제7조)
- 마.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(안 제8조)
- 바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음
(안 제10조)
- ※ 조례안 : 11조 부칙으로 구성

5. 검토 의견

가. 제정 동기

- 동 조례안은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이 지난 '08년 3월 14일 개정되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·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도록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규정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후에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「같은법 시행령」이 지난 '08년 9월 12일 개정되어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시·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임.

나. 현행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

- 동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('08.3.14)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으로 '학교폭력대책 기획위원회'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.(법률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운영)

다. 타 시도 조례 운영 현황

- 16개 시.도 중에서 경남이 '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' 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. ('08.10.16, 조례 제3347호)
- ※ 나머지 시.도는 동 조례를 추진중에 있음.

라. 검토결과

-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'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' 를 도지사 소속하에 두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교육청 소속하에 운영하고 있는 '학교폭력대책 기획위원회' 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따라서, 동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그 예방 대책을 충청북도 조례로 제정하여 수립.시행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